

안산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17
----------	------

제출년월일 : 2009. 11. 20.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시행(2009. 8. 9)으로 우리시 평생학습 조례와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안산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함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법 제9조→제5조)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
- 소속직원의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평생학습위원회」의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함(안 제6조).
※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안 제6조4항)
-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10. 19.부터 2009. 11. 9.까지(21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평생학습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주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③ 시장은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시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와 교육청의 평생교육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

지 못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제14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운영중인 평생학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로, 평생학습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한다.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최 관
	담당·팀장 직위·성명	평생학습담당 조달오
	담당자 성명·전화	신선기 (행정 344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 평생 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 평생학습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p>
(신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 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기본원칙)	<p>제3조(시장의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교육 ----- ----- 시의 ----- -----. ② ----- ----- ----- 교육 ----- -----. ③ ----- ----- ----- 교육 ----- -----.
(신설)	<p>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 기관·단체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p>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p>제5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시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제3조 (평생학습위원회의 설치구성)	<p>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와 교육청의 담당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신설)	<p>제6조 (평생교육협의회)</p> <p>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p> <p>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12명-----,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 -----.</p> <p>③ --- 시와 교육청의 평생교육 ----- ----- 교육----- -----.</p> <p>④ -----, 1회에 한하여 연 임-----. --,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 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의장은 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하 고, 부의장- 의장- -----의장-----.</p> <p>⑥ 협의회----- 협의회----- -----, ----- 평생교육업무----- -----, ----- 평생교육-----.</p> <p>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 협의회-----의장-----.</p>
제4조(위원회 기능)	<p>제7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p>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p>제8조(협의회 --) 협의회----- -----.</p> <p>1. --교육-----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교육----- -</p>
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
제5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p>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수하였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 -----.</p>
<p>(신설)</p> <p>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협의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회의----- ----- 참석수당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p>
<p>제6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삭제)</p>
<p>제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5.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 -----. 1. (현행과 같음) 2. --교육 ----- 3. --교육 ----- 4. --교육 ----- 5. --교육 ----- 6. 그 밖에 평생교육 -----</p>
<p>제8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 ② 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p>
<p>제9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p>	<p>제14조(공동추진 등) --- 제12조----- -----</p>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교육청</u>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 -----.

안산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17
----------	------

제안년월일 : 2009. 12. 2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관한 규정과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협의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안산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각각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5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시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수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삭제 >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생략)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원안 제6조와 같음)
제7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삭제 >
제8조 ~ 제15조 (생략)	제6조 ~ 제13조 (원안 제8조부터 제15조 까지와 같음)